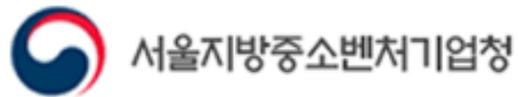


# 2022년 공공구매제도 유의사항 안내





# 목 차

- 1 2022년 공공구매제도 변경사항**
 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변경
  - 기술개발제품 대상인증 변경
- 2 공공구매제도 주요 위반사례**
  -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
 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
  -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
  -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
  -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목표비율제도

# 1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변경

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제품(213개)을 구매할 경우,  
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게서 구매하여야 함

- **제품지정**: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3년마다 지정(금번 지정된 632개 세부품목은 '22년~'25년 적용)
- **입찰**: 공공기관의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에는 **직접생산 중소기업만** 참여 가능
- **직접생산**: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협동조합의 실사를 거쳐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** 발급
- **공사용자재**: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일정규모 이상 공사(종합공사 40억, 전문공사 3억) 발주시 공공기관이 **물품으로 분리하여 발주**(관급자재로 공급)

## 신규지정(51개)

- **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(8개)**  
원격자동검침시스템, 무인교통감시장치, 바닥형보행 신호등, 교통관제시스템, 교육용 로봇 등
- **코로나19 관련 품목(3개)**  
화학물질보호복, 비말차단마스크, 보건용마스크
- **특별고용지원업종(5개)**  
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, 통학운송서비스,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,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등
- **가구(5개)**  
스툴의자, 실습대, 교탁, 칠판보조장, 약품장

## 지정제외(33개)

- **건자재**  
덱플레이트, 가설방음판
- **의류 및 가방**  
남성용스웨터, 지갑, 서류가방, 손가방, 소지품케이스
- **가구**  
산업용작업대, 이동식스툴테이블, 시약보관대
- **조명**  
고압나트륨램프, 주철가로등주, 수중조명등
- **기타**  
항온항습기, 화장로, 연관보일러, 수중인라인펌프 등

## 2. 기술개발제품 대상인증 변경
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(13종)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여  
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와 판로개척 지원

- **관련근거**: 판로지원법 제13조
- **의무구매율**: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%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
- **대상제품군 조정**: 기존 18종 인증을 13종으로 우선구매 대상 인증 축소
- **우선구매요청**: 기업 요청시 지방중기청에서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(구매협조 요청 공문 발송)
- **우선구매지원**: 요청 받은 공공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구매 여부 등 조치 결과를 지방중기청에 회신

### 대상인증(13종)

- **신규지정(1종)**  
재난안전제품인증
- **유지(11종)**  
성능인증, NEP(신제품인증), NET(신기술인증), GS인증, 우수조달공동상표, 우수조달물품지정,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, 혁신제품, 녹색기술제품,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, 산업융합품목
- **통합(3종→1종)**  
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,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, 성과공유기술개발 →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
- **일몰(4종)**  
우수산업디자인(GD), ICT융합품질인증,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, 공공기관 개발선택품
- ✓ 해당 4종은 '21.12.31 기준으로 인증기간이 유효할 경우 인증기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

# 1.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주요 위반사항

공공기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여  
제품 발주계획,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

- **관련근거**: 판로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,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6조
- **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**: 공공기관에서는 회계 또는 중소기업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
- **공공구매지원관리자 운영**: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역할은 **아래의 역할을 수행**
  1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른 **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**
  2.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**이행 여부 조사**
  3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**예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**

## 주요 위반사례

- **공공구매지원관리자 미지정**  
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였다고는 하나, 내부적으로 발령내지 않거나 업무분장에 미반영한 경우
- **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 미흡**  
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기간 경쟁제도 예외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나, 미이행한 경우

## 2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주요 위반사항

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직접 생산하는  
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

- **관련근거**: 판로지원법 제7조 및 제9조
- **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**: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중기간 경쟁제품을 입찰하여 구매시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(또는 지명경쟁)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**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시**: 아래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와 계약하여야 함
  1.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
  2.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
  3.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
  4.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, 다목,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

### 주요 위반사례

- **입찰시 중기간경쟁제도 미이행**  
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와 혼동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계약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,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(또는 지명경쟁)을 통해 조달계약하지 않은 경우  
✓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기업이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갈음할 수 있음(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 가능)
- **중기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진행**  
구매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일반경쟁으로 진행한 경우
- **중기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**  
수의계약에서의 중기간 경쟁제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

# 3.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주요 위반사항

공공기관이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계약 체결

- **관련근거**: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
- **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**: 구매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
  1. 추정가격 1억원 미만: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
  2.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(현재는 2억1천만원) 미만: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
  3. 고시금액(현재는 2억1천만원) 이상: 제한 없음

## 중기간 비경쟁제품

추정가격 1억원 미만(소기업·소상공인 제한)  
추정가격 1억~2.1억원 미만(중소기업자 제한)

## 중기간 경쟁제품

금액에 상관없이  
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

## 주요 위반사례

- **제한경쟁 미이행**  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비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인지 미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 
추정가격 1억원 미만이나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을 진행한 경우
- **계약시 중소기업 여부 및 기업 규모 미확인**  
계약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 규모(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) 미확인
- ✓ 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할 수 있음

## 4.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주요 위반사항

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4천만원 이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

- **관련근거**: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
- **대상공사**: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,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
- **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**: 공사에 포함되는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자재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야 함

### 주요 위반사례

- **직접구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분리발주 미이행**  
공사 부분의 공공구매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통합발주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**지방중기청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분리발주 미이행**  
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방중기청과 협의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나,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# 5.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 위반사례

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, 기술개발제품, 여성기업제품, 장애인기업제품,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

- **관련근거**: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제13조, 여성기업법 제9조,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, 창업기업법 제5조의2
- **중소기업제품**: 총 구매액의 **50%** 이상
- **기술개발제품**: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**15%** 이상
- **여성기업제품**: 물품·용역은 각각 총 구매액의 **5%** 이상, 공사는 공사 총 구매액의 **3%** 이상
- **장애인기업제품**: 총 구매액의 **1%** 이상(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기업제품에 포함 안 됨)
- **창업기업제품**: 총 구매액의 **8%** 이상

## 주요 위반사례

- **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 미달성**  
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찾기 어렵거나, 구매 특성상 매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
- **계약시 개별 확인서 확인 미흡**  
계약 기업의 인증 획득 또는 유효기간 만료 여부 미확인으로 구매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
- ✓ 기업의 각 개별 확인서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할 수 있음

# 감사합니다

물품·용역 : 김주아주무관(02-2110-6342)  
공 사 : 최주영주무관(02-2110-6324)

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